##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483 발의연월일 : 2025. 5. 12.

발 의 자:임광현ㆍ이정문ㆍ김정호

정준호 · 강준현 · 조정식

유동수 · 김용만 · 윤준병

이병진 • 박해철 • 박홍배

황정아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 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지난 2009년 정해진 이후 16년째 개정된 바가 없고, 그간의 물가상승과 서민·중산층의 조세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본공제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 함(안 제50조).

법률 제 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만원을"을 "180만원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제50조(기본공제) ①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			
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u>150만원을</u> 곱하	<u>180만원을</u>		
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한다.	<b>.</b>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